일본 → 한국,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반입 허가 정보 25년 1/16 기준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반입허가 신청 안내

<일반적 사항>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반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양식1 : Inbound Traveler's Permit for Narcotics contained Medication for Personal Use
2. 양식2 : Narcotics bring in permit - ★이 있는 칸만 영어 또는 한국어로 기재
3. 풀사이즈 여권사본 (사진 및 여권번호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4. 항공권 예매티켓 사본 (입출국일, 입국편명 및 장소, 탑승객 성명이 기재된 e-ticket)
5. 의사의 진단서
   (의료기관명, 대상 환자명, 처방한 의사의 성명 및 서명, 진단명, 의약품명(주성분 포함),용법, 1회 복용량, 1일 복용량, 총 처방량, 발급일자 기재)
6. 관련 처방전 (환자 정보, 발행일, 주성분, 용량, 총 처방량 기재)
7.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반출승인서. 제출할 경우 5, 6번 생략 가능. 해당 국가에서 반출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의 '해당 없음' 칸에 체크

.....

신청서 송부처

※ 제출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 :
e-mail: narcotics@korea.kr 電話+82-43-719-2812,2815 fax: +82-43-719-2800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언어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을 받아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비즈니스 또는 교육 (교환유학 포함) 목적으로 장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교환유학생 증명서나 해외근무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허용기간을 최대 90일(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90일이 넘는 분량은 한국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반입 허가는 여행자의 여행 기간에 엄격하게 맞추어 허용됩니다.

-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므로 입국 10일 전에는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미비가 있거나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반입 가능한 분량은 체류 기간 동안 모두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어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 장시간 비행 등으로 여유분이 필요한 경우 여유분 반입은 최대 5일 분량까지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출국하여 타국을 여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항공권을 첨부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기간에 사용할 약물 보유를 허용합니다. 이때 허용 가능한 분량은 한국 체류 기간 중 및 출국 후 여행 기간 중에 모두 소비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 모든 처방약은 기내 반입 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o 반입허가를 받은 분량을 초과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포나 국제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받으려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반송 또는 파기 처리합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체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한 반입 허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 가족 등 타인 명의의 대리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한 자료 및 정보에 오류 및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신청이 기각되거나 발급한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대마 반입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 대마의 정의 : 대마초(Cannabis satiba L)와 대마수지 및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Cannabinol·Tetrahydrocannabinol·Cannabidiol 중 한가지 이상을 함유한 제품, 상기의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또는 혼합물.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

출처 : 주 일본 한국 대사관 (250116)

[안내] 여행 직거래 플랫폼 '여행거래소 www.GV10.com' 모바일에서 쉽게 보기

갤럭시 폰에서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www.GV10.com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

아이폰에서